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 I.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1.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2.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4.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 II. 연장보육 세부 모형 관련

1.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2.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3.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4.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5.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연장보육의 보육료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7.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8.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9.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10.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11.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12.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 I.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 1.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보육지원체계 개편안(보육시간 구분, 각각 전담교사 배치)이 적용되면
  -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참여 사례 (양평군 양서 어린이집)

- **학부모 강○○**, “학원 선생님이 근무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었는데 시범사업 이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갈 때면 늘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서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연장보육 선생님이 오시면서부터는 하원 시 아이가 어떻게 오후 시간을 보냈는지 자세히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이 너무도 편안해서 만족도가 매우 큼니다.”
- **조부모 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듯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생각합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울로 일을 다니고 내가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데, 이전에는 아이 하원시간에 지친 표정의 선생님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연장보육이 도입되면서 선생님들 표정부터가 정말 밝아지셨고 아이도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 하였는데 지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 **보육교사**는 별도 연장반 교사 배치에 따라 휴게시간, 수업 준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참여 사례 (동작구 로야 어린이집)

- 보육교사 표○○, “4시 이후 연장보육 선생님께서 아이를 보육하시게 되자 교구를 정리하고 다음날 보육을 준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근로자로서 상상도 하지 못하던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보육교사로서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어 장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결관리에 소모되었던 교사의 업무부담 및 보육료 신청 업무부담이 완화됩니다.
- 아이가 머문 시간만큼 정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보육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 (아이) 연장보육반 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
- (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에 집중
- (어린이집) 적절한 보상으로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 2.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개편안은 '20.3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9.5월부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 필요한 예산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 전국 어린이집 원장·교사·부모를 대상으로 개편안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20년 1~2월에는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진행하여 3월부터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 연장보육료 639억(국비, 0~2세 219억, 3~5세 420억), 연장전담교사인건비 512억
- 또한 정부예산안 기준 '20년 영유아보육료는 '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되었습니다.

### 4.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9만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 \* '20년 연장보육 대상 영유아(영유아총22만명 영·유아각11만명) / 연장보육반 정원(영아반5명 유아반15명)
  - ①신규 채용(1.2만명), ②보조교사 전환(1만명), ③시간연장 보육교사(7천명) 등 기존 인력의 탄력적 배치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 '20년 정부안에 신규 인력 인건비(428억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수당(84억원) 등 총 512억원 반영
-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Ⅱ. 연장보육 세부 모형 관련

### 1.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 다만,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기본보육은 오후 4시에 끝이 나며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시간에 맞춰 하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됩니다.
  -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 받으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맞춤형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연장반을 위한 보육을 준비하며 아동의 오후 시간을 세심히 관찰, 하원 시 부모에게 인계해주는 등 보다 안정감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수의 아동이 하원 하는 오후 4시 이후 “어린이집에 남아 하원을 기다리던 시간”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5.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6.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 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차량으로 하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본보육 이후 일괄 하원이 어려우며, 영유아 특성상 하원시각이 되더라도 옷을 갈아입거나 하원 시 담임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순차적 하원이 이루어지는 현실 반영

구 분	0세반	1세반	2세반
'19년 맞춤형	839천원	575천원	437천원
'19년 종일반	939천원	664천원	510천원
'20년 보육료	968천원	684천원	525천원

-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단위 : 원, 시간당)

구 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 7.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아동의 하원시각에 따라서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8.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 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다만,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채용 여부는 어린이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9.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 연장보육반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반 전담교사가 주간 담임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찰·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0.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또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장기미종사자 교육>

- ① (교육대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② (교육 이수 시기)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하되, '20.3월 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 \* (사업지침 규정) 보육업무 수행 이전 만 2년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또는 연속 40시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이수한 것으로 봄
- ③ (교육 시간) 40시간
- ④ (교육비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납부, 지자체 교육비 보조 가능
- ⑤ (교육기관) 시도지사가 지정, 위탁

- 한편 원장이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사전·상시 교육토록 하고, 필요 시 수습기간을 거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1.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2.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편안 적용 시,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